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유보내용	<p><u>투자</u></p> <p>1. 한국은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법(2012) 제4조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12) 제5조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한을 유보한다. 다만 한국은 즉시 호주에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였다는 서면통지를 하고, 그러한 조치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 외국인투자 촉진법(201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12) 및 그 밖의 적용 가능한 법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나.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채택되거나 유지된다.다.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라.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한다. <p>2. 제11.16조제1항에 따른 중재에 제기될 수 있는 청구를 저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다음의 청구를 제11장(투자)의 제2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 한국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조치를 채택하였다. 그리고나. 청구인 또는 해당되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한국 기업이 그 조치를 이유로 또는 그 조치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한 청구의 경우, 제11장 제2절이 준용되며, 제11장 제1절상의 의무 위반 또는 위반주장에 대한 제11장 제2절상의 모든 언급은 이 유보항목이 없었다면 제11장 제1절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될 그 조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한국이 그 조치가 제1항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열거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없다.

3. 제1항에 언급된 조치가 제8장(금융서비스)의 적용 대상인 한도에서 이 유보항목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11535호, 2012.12.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p><u>투자</u></p> <p>한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그러한 조치는 제19장(투명성)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p> <p>제8.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유보항목은 제8.2조(내국민 대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합치 조치로 취급되지 아니한다.</p> <p>이 유보항목은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결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공기업에는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된다.</p> <p><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p> <p>한국의 부속서I 및 부속서II 상 약속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한국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이 유보항목은 한국 법이 허용하는 특급배달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인 한도에서 제7.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1.3조(내국민 대우)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문단은 한국이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p> <p>제8.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유보항목은 제8.2조(내국민 대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합치 조치로 취급되지 아니한다.</p>
기존의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법률 제11845호, 2013.5.28)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자연인의 주재에 의한, 또는 제10장(자연인의 이동)의 규정에 따른 이민, 입국 또는 일시체류를 포함한 자연인의 그 밖의 이동에 의한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p>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p> <p>한국은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방위산업체(방위사업법 제3조에 규정된 기업)의 신주 발행 주식이 아닌 기발행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에 규정)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얻는다.</p>
기존의 조치	<p>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법률 제11535호, 2012.12.11)</p> <p>방위사업법 제35조(법률 제11713호, 2013.3.23)</p>

분야	토지취득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유보내용	<p><u>투자</u></p> <p>한국은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의 토지 취득은 계속 허용된다.</p> <p>가. 외국인토지법 제2조상의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p> <p>나. 아래의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상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외국법인의 지점인 경우. 다만,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2) 고위경영진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3) 해당 법에 규정된 토지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p>한국은 외국인에 의한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의 조치	<p>외국인토지법 제2조부터 제6조까지(법률 제11690호, 2013.3.23)</p> <p>농지법 제6조(법률 제11694호, 2013.3.23)</p>

분야	총포·도검·화약류 및 유사 물품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또는 석공의 제조, 사용, 판매, 보관, 운반, 수입, 수출 그리고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공 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취약집단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국가소유의 국가전자/정보시스템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현지주재(제7.5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정부 고유의 비밀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기능 및 권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금융서비스 관련 지급 및 결제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시장 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	------------------------

한국은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공 훈련, 공익사업, 대중교통, 공공주택, 보건 및 보육.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 (GATS/SC/48, GATS/SC/48/Suppl.1, GATS/ SC/ 48/ Suppl.1/ 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및 GATS/SC/48/ Suppl.3/Rev.1)에 기술된 대로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으로만,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다음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다.

- 가. “모든 분야” 로 기술된 유보항목을 제외하고, 한국 부속서 I의 유보항목 중 관련 의무란에 시장접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서비스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 이라고 기재하고, 서비스공급형태 4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고 기재한다.
- 나. “모든 분야” 로 기술된 유보항목을 제외하고, 한국 부속서 I상의 유보항목 중 시장접근 의무에 대한 제한사항을 기술한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항을 해당 서비스공급 형태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기재한다. 그리고
- 다. 부록 II-가에 기재된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부록 II-가에 적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다.

이러한 변경은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GATS 제16조제2항바호 관련 어떠한 제한 사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 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제7.6조(비합치 조치)에 의하여 수정된 대로의 제

7.5조(현지주재)가 적용된다는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산, 또는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편방향위성전송(DTH) 및 직접방송위성(DBS) 텔레비전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오디오 서비스와 관련, 상호주의 조치의 적용을 이유로 또는 라디오 스펙트럼의 공유, 시장접근 보장 또는 내국민 대우와 관련한 국제협정을 통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 철도운송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철도운송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환경서비스 - 음용수 처리·공급서비스, 생활폐수 수집·처리서비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서비스, 위생 및 유사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p data-bbox="665 598 1071 635"><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p> <p data-bbox="665 685 1487 884">한국은 다음의 환경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 그리고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환경영향평가서비스는 제외한다)</p> <p data-bbox="665 934 1487 1054">이 유보항목은 관련 법 및 규정에서 상기 서비스에 대하여 사적 공급이 허용되는 한도에서 민간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해당 서비스의 공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분야	원자력 에너지 - 원자력발전: 핵연료의 제조 및 공급, 핵물질,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사용 및 조사된 핵연료 처리 및 처분을 포함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모니터링 서비스, 핵에너지 관련 서비스, 설계·유지 및 보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원자력에너지 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에너지 서비스 -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 그리고 전력사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 (제7.2조 및 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p> <p>한국은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산업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배전 및 전력판매) 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전력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p> <p>이 유보항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11.9조제1항 바호와 불합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p>

분야	에너지 서비스 - 가스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천연가스의 수입과 도매 유통, 그리고 인수기지와 전국 고압 주배관망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산업(가스산업)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가스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분야 유통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중개서비스, 도매 및 소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농축산물, 식음료에 대한 중개서비스

나. 곡물, 육류, 가금, 곡분, 홍삼, 비료에 대한 도매서비스, 그리고

다. 쌀, 인삼 및 홍삼에 대한 소매서비스

분야	운송 서비스 - 도로여객운송 서비스(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운송 서비스 -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p data-bbox="678 573 1079 613"><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p> <p data-bbox="678 660 1489 819">국제해운회사에 의한 컨테이너화물 도로운송(카보타지는 제외한다)과 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를 제외하고, 한국은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분야 운송 서비스 - 내륙주운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내륙주운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운송 서비스 - 저장 및 창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과 관련된 저장 및 창고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비독점 우편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p> <p>한국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군복무자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지닌 인이 우체국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p> <p>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그 부처에 속하는 차량 정수의 결정과 우체국에 그 차량을 배정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p> <p>한국 우정당국은 국내 및 국외 서신의 수집, 처리, 배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유보한다.</p> <p>한국 우정당국의 배타적 권리는 우편망에 대한 접근과 그 운영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p>
기존의 조치	<p>우편법(법률 제11690호, 2013.3.23)</p> <p>병역법 (법률 제11849호, 2013.6.4)</p> <p>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p>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방송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이 유보항목이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서비스 유보항목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보장한다.
기존의 조치	방송법 제8조, 제9조,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제78조 및 제78조의2 (법률 제12093호, 2013.8.13) 방송법 시행령 제14조, 제5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및 제61조의3(대통령령 제24763호, 2013.9.26)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통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란 해당 서비스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를 포함한다)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IPTV와 양방향 방송을 포함한다.
기존의 조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제7조, 제9조, 제18조 및 제21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20조(대통령령 제24445호, 2013.3.23)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특혜를 주는 어떠한 공동제작 약정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공동제작 약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부여될 수 있는 공식 공동제작물 지위는 공동제작 약정의 대상이 되는 작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기존의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02호, 2013.7.16)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35호, 2008.12.31)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p> <p>한국은 방송 또는 시청각 프로그램이 한국 콘텐츠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한국은 이 유보항목이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서비스 유보항목 또는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 및 통신 서비스 유보항목과 불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p>
기존의 조치	<p>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0조(법률 제11902호, 2013.7.16)</p> <p>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9조 (대통령령 제24036호, 2012.8.13)</p> <p>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8호 2012.8.17)</p> <p>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35호, 2008.12.31)</p>

분야	사업 서비스 - 부동산 서비스(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외한 부동산 개발·공급·관리·판매 및 임대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채(제7.5조)
유보내용	<p data-bbox="678 478 1076 523"><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p> <p data-bbox="678 560 1489 642">한국은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 data-bbox="678 685 1489 849">한국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기업구조조정조합, 그리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를 포함한 기업구조조정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 data-bbox="678 892 1489 1054">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제8장(금융서비스)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현행의 합법적 투자 은행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p>

분야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의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 또는 그 장르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할 때, 한국은 한국 소비자들이 그러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거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 소비자를 겨냥한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국은 그러한 콘텐츠의 이용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위 문단에 의거하여 채택되는 어떠한 조치도 제19장(투명성)의 규정과, 적용 가능한 경우 제7.8조(규정의 개발 및 적용에서의 투명성)에 따라 시행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하며, 필요 이상으로 교역 제한적이거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유형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영화 또는 그 밖에 비디오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이 협정 서명일 현재 방송법에 정의된 방송 서비스나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 및 통신서비스 유보항목에서 정의된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콘텐츠산업 진흥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분야	사업서비스 -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사업 및 환경 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 농업·수렵·임업 및 어업 부수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유전적 개량, 인공수정, 벼 및 보리 도정,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과 관련된 제반 활동 등을 포함한 농업, 임업 및 축산업 부수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농협·산림조합 및 수협에 의한 농업·수렵·임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어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유보내용	<u>투자</u> 한국은 한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신문 발행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신문의 발행(인쇄 및 배포를 포함한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2013.3.2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분야 교육서비스 - 유아·초등·중등·고등 및 기타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유아·초등 및 중등교육, 의료·보건관련 고등교육, 유아·초등 및 중등교원양성 고등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교육 수준의 원격교육(학점, 졸업장 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성인 교육 서비스는 제외한다), 그리고 기타교육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관련업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시장 접근(제7.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시행령, 시행규칙 및 그 밖의 부속 규정을 포함해 다음에 기재된 법령 또는 대체 법령은 투명성 사례의 일부이다. 이 유보내용에는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안이 포함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체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약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결핵예방법 암관리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한의학 육성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의료기기법
축산물위생 관리법
화장품법
국민체육진흥법

분야	보건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시장 접근(제7.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다음과 관련한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혈액 및 그 구성성분의 수집, 혈장분획제제를 포함한 혈액 및 혈액 제제의 유통, 혈장분획 서비스, 그리고 혈액과 혈액제제 및 서비스의 조달
기존의 조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혈액관리법 약사법

분야	레크리에이션 ·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영화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영화의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02호, 2013.7.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036호, 2012.8.13)

분야	레크리에이션 ·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박물관 및 기타 문화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문화재의 발굴, 감정 또는 매매를 포함한 문화재의 보존, 재건 및 복원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1228호, 2012.1.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62호, 2012.6.1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82호, 2011.7.2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78호, 2011.2.16)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30호, 2012.12.11)

분야	기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유보내용	<u>투자</u> 한국은 농어촌지역 관광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법률 서비스 - 외국법자문사

관련업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¹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변호사와 동등한 자격을 외국에서 취득한 자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어떠한 유형으로라도 한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자격 부여·승인·등록·허용 및 감독 그리고 그 밖의 요건에 대한 제한²;

나. 변호사와 동등한 자격을 외국에서 취득한 자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변호사·법무회사(로펌)·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와 동업·상사연합·제휴 또는 법적 유형을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대한 제한³;

다. 변호사와 동등한 자격을 외국에서 취득한 자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내에서 한국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하는데 대한 제한,⁴ 그리고

라. 외국법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호주 법무회사(로펌)가 한국에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호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시입국을 위해서는 상업적 주체가 요구된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여기에는 한국에서 그러한 유형의 법률 서비스를 한국에서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여기에는 한국에서의 그러한 관계 형성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여기에는 한국에서의 그러한 고용관계의 창설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주에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한국 법무회사(로펌)와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호주 법무회사(로펌)가 한국법무회사(로펌)와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은 그 합작투자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합작투자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한국 변호사를 파트너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다.

3. 한국은 최소한 제2항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호주 법무회사(로펌)”란 호주법에 따라 설립되고 본점 사무소가 호주 내에 있는 법무회사(로펌)를 말한다.

분야 전문직 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한국 공인회계사를 고용하는 데 대한 제한

나. 외국 공인회계사가 한국 내에서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

다. 공인회계 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다음을 허용한다.

1) 호주 내에 등록된 호주 공인회계사 또는 호주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 한국에 설립한 사무소를 통하여 호주 또는 국제 회계법 및 기준에 대한 회계컨설팅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2) 호주에 등록된 호주 공인회계사가 한국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것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한국은 호주 내에 등록된 호주 공인회계사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한국 회계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한국 공인회계사가 한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한다. 그리고

2) 호주에 등록된 호주 공인회계사 1인은 한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10퍼센트 미만까지 보유한다.

3. 한국은 최소한 제2항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 “호주에 등록된 호주 공인회계사”란 공인 회계사(Certified Practising Accountant) 또는 칙허회계사(Chartered Accountant)의 자격을 갖춘 호주 회계사를 말한다. 그리고,

나. “호주 회계법인”이란 호주법에 따라 조직되고 그 본점사무소가 호주에 있는 회계법인 또는 파트너십을 말한다.

분야	전문직 서비스 - 외국세무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현지주재(제7.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p> <p>1.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외국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한국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고용하는데 대한 제한 나. 외국 세무사가 한국 내에서 세무조정 및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 다. 인증된 세무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p>2. 제1항에도 불구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다음을 허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호주 내에 등록된 호주 세무사 또는 호주 법에 따라 설립된 호주 세무법인이 호주 또는 국제 세법 및 세제에 대한 세무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2) 호주 내에 등록된 호주 세무사가 한국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것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한국은 호주 내에 등록된 호주 세무사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한국 세무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 세무사가 한국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한다. 그리고

2) 호주에 등록된 호주 세무사 1인은 한국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10퍼센트 미만까지 보유한다.

3. 한국은 최소한 제2항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 “호주에 등록된 호주 세무사”란 공인회계사(Certified Practising Accountant) 또는 칙허회계사(Chartered Accountant)의 자격을 지닌 호주 세무사를 말한다. 그리고

나. “호주 세무법인”이란 호주법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호주에 있는 세무법인 또는 파트너십을 말한다.

기존의 조치

세무사법 제6조, 제13조, 제16조의3 및 제20조(법률 제11610호, 2013.1.1)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대통령령 제24824호, 2013.11.5)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지침 제20조 및 제22조(국세청 훈령 제1761호, 2009.8.24)

분야	사업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통제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인만이 그러한 물품,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조치	원자력 진흥법(법률 제11714호, 2013.3.23) 대외무역법(법률 제11873호, 2013.6.7)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9 호, 2013.5.31) 관세법(법률 제11602호, 2013.1.1)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제7.1조제5항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예를 들어 법집행 및 교정서비스와 같이 정부권한의 행사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 투자, 또는
- 나. 제8장(금융서비스)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한국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

분야 운송서비스 - 해상여객운송과 연안해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아래 조치를 포함하여 국제해상여객운송 서비스의 제공, 연안해상운송 및 한국 선박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국제해상여객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하여야 한다.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한다.

관련 국내법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연안해상운송은 한국 선박을 위하여 유보되며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 간의 여객 또는 화물 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된다.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규정된 대륙붕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된다. “한국선박”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 정부, 공기업 또는 해양수산부의 산하기관이 소유한 선박
- 나. 한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 다. 한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또는
- 라. 한국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책임임원)가 한국 국민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항 항만활동에 관한 조치는 제22.2조(필수적 안보)의 적용을 조건으로 한다.

부록 II-가

<p>다음 분야의 경우, GATS 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 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p>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p>연구 및 개발 서비스</p> <p>자연과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서비스</p> <p>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서비스</p> <p>학제간 연구 및 개발 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시장조사 및 대중여론 조사 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p>
<p>광업 부수 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p>
<p>포장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p>

다음 분야의 경우, GATS 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 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컨벤션 대행 서비스 이외의 컨벤션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p>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p> <p>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제공 서비스</p> <p>철도 및 항공운송 관련 시설의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 제공 서비스 제외</p> <p>여행 대행 서비스</p> <p>관광객 안내 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오직 여행사만이 관광객 안내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된다"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p>